

예산총칙

제1조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360,453,483	452,473,000
일반회계	6,139,473,691	306,973,000
특별회계	2,220,979,792	145,500,000
공기업특별회계	689,158,392	68,914,000
수도사업특별회계	308,879,144	30,887,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5,608,500	27,560,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04,670,748	10,467,000
기타특별회계	1,531,821,400	76,586,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9,320,012	1,466,000
경륜사업특별회계	36,585,155	1,829,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7,888,843	31,394,000
교통사업특별회계	54,878,631	2,743,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7,242,000	2,862,000
공영터미널조성사업특별회계	10,282,000	514,0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60,646,407	23,032,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9,010,000	450,000
유료도로특별회계	32,413,000	1,620,000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179,127,092	8,956,0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20,769,870	1,038,000
재정비축진특별회계	13,488,390	674,000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70,000	8,000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208,404천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243,120,000천원, 특별회계 149,480,000천원이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